



치안정책리뷰

POLICE SCIENCE INSTITUTE REVIEW

치안정책연구소
POLICE SCIENCE INSTITUTE

www.psi.go.kr

2009년 9월

제13호

발행인 김길배 편집인 조용관 ISSN 1976-6041(On-Line) 전화 (031)285-0183 FAX (031)285-0184

■ 한가위 인사



치안정책연구소 야경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민족의 대명절인 한가위가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저희 치안정책연구소를 성원해 주신 여러분과 가족의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평안하고 넉넉한 한가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2009년 9월 25일

치안정책연구소장 김길배 拜

■ 책임연구과제 요약

한국 보험범죄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정웅 연구관/경제학박사
치안정책연구소 범죄수사연구실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1970년대까지 일반시민의 보험인식 부족, 보험회사의 공신력 취약 등으로 인해 부진한 양상을 보였으나 1980년대에 들어 소득수준이 보다 향상되고 노년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보험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최근 2007년에도 보험산업은 수입보험료 측면에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전년대비 13.6%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세계적 금융시장 불안 속에서도 2008년 8월말 총자산 규모는 전년 동기대비 9.1% 늘어난 378조 7,641억원을 기록하였다.

보험산업의 양적 팽창과 시장구조 변화는 그에 뒤따르는 탈법위험을 배태하였으며 특히 1997년 IMF 사태 이후 경제위기와 경기변동 상황 하에서 소위 '생계형 보험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나아가 최근의 보험범죄는 생계형 범죄에 그치지 않고 조직화, 전문화되고, 범행방법도 사물을 위장한 살인행위, 고의적인 차량사고 유발, 방화행위 등 범행 수법도 점차 잔인해진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보험범죄는 최근 2005-2008년간 그 적발된 금액과 혐의자들을 기준으로 볼 때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1> 보험사기 적발 현황(2005-2008)
(단위: 백만원, 명, %)

구분	2005	2006	2007(a)	2008(b)	증감율(b/a)	
적발금액	생보	24,030	37,349	39,335	36,946	△6.1*
	손보	110,986	140,733	165,189	217,925	31.9
	계	135,016	178,082	204,524	254,872	24.6
혐의자	생보	1,118	2,490	2,309	1,694	△26.6*
	손보	18,156	24,264	28,613	39,325	37.4
	계	19,274	26,754	30,922	41,019	32.7

특히 2008년도 보험사기 조사실적 결과(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적발금액은 2,549억원, 혐의자는 41,019명이었으며, 이는 전년 2007년도에 비해 금액기준으로 무려 24.6%(504억원), 혐의자 기준 32.7%(10,097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범죄의 조직화, 전문화, 흉포화 경향과 함께 최근 보험범죄에서 보이는 특징은 기존 상해보험, 손해보험, 자동차보험 등 민영보험(private insurance)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공영보험(public insurance) 분야에까지 보험범죄의 영역이 확산,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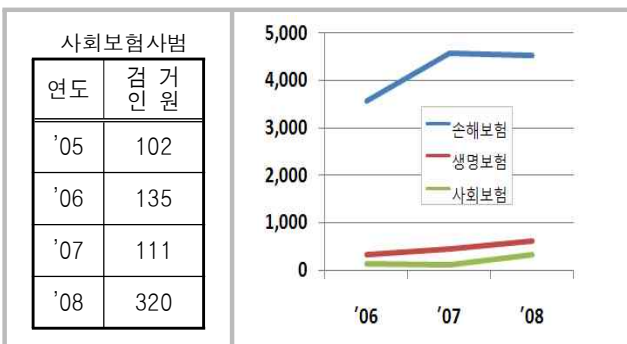
보험사고의 발생가능성을 높이는 도덕적 위험(moral hazard)은 역사적으로 볼 때 민영보험에서 먼저 비롯되었고 여러 보험 종목 중에서도 특히 역사가 오랜 생명보험, 화재보험, 해상보험 분야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보험산업의 발전에 따라 보험범죄는 자동차보험과 각종 배상책임보험, 유사보험 영역으로 확산되었으며, 더 나아가 사회보장체계(social security system)의 정비와 함께 국민 대부분이 보험제도를 이용하는 전 국민 보험시대에 접어들면서 그 보험제도를 악용하는 보험범죄는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과 관련된 의료기관, 그리고 보험과 연관된 여타 단체와 사업자에까지 사건에 연루되는 양상을 보임으로써 보험범죄 영역이 공영보험까지 확산되고 있다.

공영보험이란 공적인 국가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운영하는 보험을 말하고 이중에서도 특히 사회정책적인 면에서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을 이루는 보험인 사회보험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이 대표적인 사회보험이며 이들 4대 사회보험은 개별적으로 제정·운용되면서, 각 법률에서 허위청구, 부정청구,

부당청구 범죄행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우선 고용보험법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별토록 하고 있으며(동법 제 116조 제2항), 건강보험법에서는 대행청구단체의 종사자로서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 94조 제1항). 국민연금법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128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27조 제1항).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 127조 제2항).

<표 2> 사회보험사범 검거 추이(2005-2008)



자료: 금융감독원·경찰청(2009. 5. 4).

이러한 사회보험의 정책적 취지와 이를 훼손한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보험사범의 검거인원은 2005년 102명에서, 2006년 135명으로 증가하였고, 2007년에는 111명으로 다소 줄었다가 2008년에 다시 320명으로 대폭 늘어남으로써 최근 전반적으

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보험범죄 확산 추세와 관련 그 보험범죄의 대응방향은 선진 외국의 사례를 통해 볼 때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보험범죄에 대해 미국은 보험업법 등에서 보험사기 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조직적인 보험사기는 범죄 공모의 정도에 따라 차등 처벌하고 있다. 영국은 특별법은 없으나 2007년부터 사기법(The Fraud Act)을 통해 보험범죄 차단에 노력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형법 혹은 특별법 등을 통한 보험범죄 처벌조항 신설, 형사처벌 외에 민사상 제재(civil penalty) 제도의 도입, 보험사기 인지시스템과 신고 시스템의 활성화 등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감독당국 외에도 보험사, 소비자단체 등은 민간 및 사회보험의 효율적 관리와 탈법차단을 위한 이해당사자로서 보험범죄에 대한 사회비용(social cost)적 인식을 분명히 하고 보험범죄대응의 제도화와 그 안착에 공동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PSI](#)

치안정책리뷰를 보신 후 편집실 앞으로 의견을 보내 주시면 추첨하여 소정의 사은품을 드리며, 치안정책연구회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초대합니다.

※ 제12호 당첨자 : 박재홍

전자우편주소

- 인터넷: webmaster@psi.go.kr
- 내부망: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권태형

보내실 내용

- 이름, 연락처, 이번 호에서 좋았던 기사
- 치안정책리뷰에서 다루기 원하는 내용

■ **응역연구과제 요약**

국제수준으로의 우리나라 교통안전시설 발전 방향 연구

김진태 연구교수/교통공학박사
연세대학교 도시교통과학연구소

서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은 국제화를 지향하며 세계 속의 도시로 성장하기 위하여 국제교류를 장려하고 국제 홍보를 수행하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유럽연합, 칠레, 싱가포르, 동남아국가연합, 인도 등과 자유무역협정,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을 통해 국제시장을 개방하고 있다. 과거 농산품, 원자재 중심에서 민간 서비스 중심으로 국제교류가 활성화될 시 국내 교통안전시설을 이용하는 외국인 운전자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국제화의 반대급부로 국제수준 교통안전문제를 경험할 수도 있어 우리나라 현재 교통안전시설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적절한 대응방향을 수립하여야 할 시점이다. 본 연구는 국제수준 교통안전시설과 우리나라 교통안전시설을 비교하여 내용적 차이점, 현장 문제점 및 근본적 개선방향을 도출한다.

국제수준 기준 국내 법규 검토

UN 규정 도로표지와 교통신호협약에 가입한 세계 58개 국가들은 공통된 형태, 의미 및 운영을 준수하는 교통안전시설을 사용한다. 미가입국(예:일본, 영국, 미국, 호주)들도 협약에 가입만 하지 않았을 뿐 형태, 의미, 운영이 협약 내용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교통안전시설을 기초수준에서 준수하는 등 국제수준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교통안전시설 수준이 존재한다. 국제수준 교통안전시설환경과 비교하였을 시 우리나라 녹색신호, 적색신호, 적색점멸신호 의미도 다르고, 한 개의 황색(또는 적색)신호등 렌즈로 좌회전 황색과 직진의 황색(또는 적색)을

공통으로 표출하는 등 차이가 존재한다. 국제수준 교통안전시설환경에 익숙한 운전자들은 우리나라 환경에서 혼돈할 수 있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을 수 있어 철학적인 수준에서부터 국내 법규의 정비가 필요하다.

국제수준 기준 국내 현장 검토

일시정지 안전표지 방치

국제 및 국내기준은 ‘일시정지’ 노면표시, 안전표지가 하나의 지점에서 서로 조화롭게 설치될 것을 규정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문헌 규정과 달리 서로 조화되지 않는 ‘일시정지’ 안전표지와 노면표시 설치사례를 현장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우리나라 운전자들은 해당 시설을 습관적으로 위반하며 차량을 운행하나 국제수준 교통안전시설 환경에 학습된 외국인 운전자들은 혼돈하여 위험할 수 있어 우리나라 교통안전시설환경 수준을 경시할 수 있다.

혼돈 가능한 교통안전시설

우리나라는 지점에 따라 신호 현시순서를 운전자들에게 보조표지(불법시설물)로 제공하고 있으나 이는 국제적으로 사례가 없는 경우로 외국인 운전자들은 다른 내용으로 오인할 수 있다. 또한 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교통신호등이 현장에 많이 사용되며, ‘교통신호’와 유사한 도로안전시설물이 현장에 설치되어 혼돈스럽다. 외국인 운전자들은 우리나라 교통안전시설 현황을 확인하고 법 적용 수준을 낮게 인식할 수 있어 국제화를 지향하는 우리나라 위상에 큰 흠이 된다.

문제점 분석 및 진단

국내용 신호체계 및 보조표지

우리나라 4색 신호체계는 기본적으로 중첩현시 표출과 관련된 운전자 예측 출발 문제를 내재한다. 4색 신호등은 운전자의 예측출발 상황을 기본적으로 조장하기 때문에 운전자의 예측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경찰은 신호 현시순서 보조표지(불법시설물)을 현장에 설치하나 이는 국제수준에서 기형적인 보조표지로 외국인 운전자들에게 생소하여 혼돈될 수 있다. 운전자 예측출발억제 문제는 3색 신호체계 도입과 연계하여 소거할 필요가 존재한다.

잘못된 교통안전시설 현장

장래 외국인 운전자와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의 우리나라 교통안전시설환경을 바로잡기 위하여 전국 수준에서 잘못 설치·운영되고 있는 교통안전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국제수준 교통안전시설환경 발전방향

국내 신호체계 및 보조표지 개선

- **국제수준 3색 신호체계 적극 도입:** 3색 신호체계에서는 좌회전전용신호등과 직진전용신호등으로 구분되어 직진전용 신호등면에 좌회전 신호상황이 겹쳐서 표출되지 않는다. 운전자들이 교통신호상황을 교통신호 등기 조합으로 이해하지 않아 운전자에게 명확하게 통행우선권을 부여하여 예측출발 기회를 억제한다(직진하는 운전자는 직진전용 신호등만을 주시하여 혼돈으로 인한 예측출발 기회가 없다).
- **국제수준 3색 신호체계 도입 시 신호 현시순서 보조표지(불법시설물)를 소거할 수 있다.**
- **교통신호제어장비 요소기술 변화:** 4색 신호등을 사용하는 현재의 우리나라 4색 신호체계에서 3색 신호체계로 전환되는 경우 신호제어기와 관련된 요

소장비 개선이 필요하다.

교통안전시설 현장 정비 및 교육

- **교통안전시설환경 기술 기준 마련:** 현장의 교통안전시설환경 개선과 함께 앞으로의 현장 교통안전시설환경구축에 사용될 기술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기술기준이 모호하여 우리나라 교통안전시설 실무수준에서 주관적으로 해석하였던 부분의 상세 기술기준을 포함한다.
- **현장 교통안전시설 정비 사업:** 교통안전시설관련 핵심기술을 마련하고 지침을 수립한 후 전국 수준에서 현장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하여야 한다. 교통안전시설 전문가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사업과 관련된 계획 및 예산을 수립하여야 한다.
- **운전자 교육사업:** 개선된 환경에 준하여 운전자 단속을 통한 경찰의 계도가 필요하나 운전자 재교육 및 홍보가 선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속을 통한 계도를 수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우리나라 교통안전시설환경이 재정비사업과 맞물려 운전자 재교육이 수행되어야 한다.

결론

한반도선진화재단은 OECD 30개 국가 포함 세계 주요 40개국과 비교하며 선진화수준을 연구한 결과 우리나라는 전체 40개국 중 30위로 매우 낮은 수준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별히 낮게 책정된 부문은 '낮은 법질서 수준'이었다. 우리나라는 교통안전시설환경이 도로교통법 기준과 다르게 현장에 설치되고 있어 그러한 교통안전시설물을 우리나라 운전자들은 반복적으로 무시하고 위반하고 있어 교통안전시설 관련 우리나라 국민의 '법질서 수준'은 매우 낮다. 우리나라 교통안전시설물을 국제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노력을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도로교통안전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며 및 우리나라의 선진화수준, 국제화 환경을 뒷받침할 것이다.

PSI

■ 치안정책 제언

지역사회 파트너십 형성을 통한 치안역량 강화방안

이상수 선임연구관/행정학박사
치안정책연구소 정책기획연구실

1. 정책결정 환경의 변화와 대응 필요

지난 2003년 당시 전북 부안군은 커다란 혼란에 빠졌다. 전라북도 부안군에 위치한 위도(蝸島)가 '핵폐기물 후보지로 선정'되었기 때문이다. 사건의 경과는 이렇다. 2003년 7월 14일 전북 부안군이 전국에서 최초로 위도에 '원전수거물 관리시설(핵폐기장)'을 유치하겠다는 신청서를 산업자원부에 제출했으며, 7월24일 산업자원부는 위도를 핵폐기장 건립을 위한 부지로 결정했다. 이에 부안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큰 반발에 부딪혀 원전센터 부지 선정이 무산(無産)되고 전면 백지화되었다.

결국, 당시 참여정부는 부지 유치를 주민의사에 맡기자는 결정에 따라 2004년 '주민참여적 부지선정 절차'가 새로 마련되었으며, 2005년 11월 주민투표를 통해 경북 경주시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매립장으로 선정되었다. 이후 경주시는 방폐장 유치대가로 특별지원금 3천억원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되었으며 지역개발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사례를 통해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왜 부안주민들은 핵폐기물 처리장 부지선정을 격렬히 반대했을까?

이는 증거에 기반한 정책결정(Evidence-based policy making) 또는 합의에 기반한 정책결정(Consensus-based policy making)이란 관점에서 볼 때 그 문제점이 확연히 드러난다. 전자는 객관적인 자료와 수치를 제시해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가 다른 집단 간의 조정과 타협을 도출하려는 노력이 병행된 가운데 이루어진 정책결정을 의미하고, 후자는 이해관계자들간의 사전 의견수렴과 조정 등에 기초한 합의를 토대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춰볼 때, 전북 부안군의 사례는 이러한 점

근방식에서 한참이나 거리가 있었다. 왜냐하면 당초 부지 선정 신청이 지역개발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할지라도 사전에 지역주민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패의 단초를 발견할 수 있다.

2. 협력적 거버넌스 증진의 필요성

이 사례를 통해 왜 주민참여 및 새로운 거버넌스(new governance)에 기초한 협치(協治)가 중요한지 역력히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정부-지자체 주도의 독점적·폐쇄적·일방적 지방공공서비스 제공방식에서 이제 민간부문 및 지역주민·시민사회와 대등한 관계에서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요청받고 있는 것이다. 즉, 지방정부와 주민간 파트너십 형성 및 네트워크의 기능 제고를 위해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한 협력적 동반자 관계(cooperative partnership relation)를 기초로 네트워크 주체간 조정메카니즘(coordination mechanism)이 새로운 거버넌스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는 Kooiman(2000)의 공동 거버넌스(co-governing), 계층제 거버넌스(hierarchical governing), 자기 거버넌스(self-governing)의 거버넌스 유형 분류 중 네트워크·파트너십 등 자발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동 거버넌스를 의미하며, 지방행정에 있어서 각 네트워크 주체간 상호조정을 통한 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Gray(1989)의 '어느 당사자도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이해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가는 통치과정'인 협동 거버넌스와 유사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경찰활동에 있어서 역시 동일한 시대적 요청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3. 거버넌스 증진을 통한 지역치안 역량 강화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경찰과 공동체간의 공동노력에 의해 범죄와 무질서에 대한 문제 인식과, 공동체 내의 모든 주체들의 파트너십(community partnership) 형성과 참여를 통해 문제해결을 탐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공동체의 안전과 활력에 도움을 준다. 이러한 지역중심 치안협력 네트워크 구성은 최근 더욱 홍보화되는 범죄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공동체 자율적인 안전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지역사회의 불법·무질서 행위 등 생활안전에 위협적인 치안환경에 지역내 기관·단체가 공동대응하여 지역안전을 도모하고, 법질서 준수문화의 조성과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통하여 선진 일류국가 건설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다기관 치안협력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하다. 지역중심 경찰활동의 성패는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공공 및 민간 기관, 그리고 공동체 내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공동협력에 달려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 이미 2009년 7월 현재 전국 광역(16개) 및 기초자치단체(221개) 단위에 총 237개 지역치안협의회 발족이 완료되어 지역사회 법질서 확립 및 치안인프라 확충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자치단체·경찰·교육·소방·언론·시민사회단체 등 참여기관 및 단체 수는 3,932개로 협의회 1개당 평균 16.6개가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치안협의회는 해당 지역의 경찰관서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소방·교육청 등 유관기관 간 사무협약 체결을 통해 운영되고 있어 법적·제도적 기반이 취약하고 운영재정 확보 및 지속적인 추진동력을 확보하는 데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치안수요 증가에 따른 경찰의 업무범위가 확대되면서 지역사회 법질서 확립 및 치안 주체들과의 상호협조와 파트너십에 기반한 지역사회 중심

경찰활동(community-oriented policing)의 활성화를 통해 범죄예방 능력 강화와 지역안전(community safety)을 확보할 수 있는 문제해결식 접근(problem-solving approach)이 현금 한국 사회에서 강력히 요청되고 있다.

이에 향후 효과적인 지역사회 치안 역량 강화를 위한 치안협력 파트너십 증진방안 및 네트워크 관리운영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 치안협력 네트워크의 실효성 확보방안

치안협력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 치안협의체는 법적 강제에 의해 다자간 협력을 제도화한 것이다. 따라서 참여주체별로 분명한 역할분장과 사업절차의 공식화를 통해 초기단계부터 협력의 동기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참여주체간 협력을 강제하는 기제는 절차적 순응을 확보할 수 있고 최소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만 지역안전을 위한 혁신을 저해하고 실질적 순응을 제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협의체가 일종의 위원회 형태로 운영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지역치안협의체는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 인력, 예산, 사업 등 자체의 협력인프라가 확보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일정한 사안에 따라 회합하는 집합체에 불과하다.

또한 출범 초기 실효성있는 활동기반을 다지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법령, 조례, 규칙 제정 및 협약 체결 등)을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을 우선하고, 운영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산 확보방안으로는 참여 주체간 분담금 배분과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 지원을 통해 해결하도록 한다.

둘째, 치안협력체의 내실화를 위한 법제도화 접근 방법은 법 제정, 지방조례 제정, 사무협약 등이 있을 수 있는 바, 우리나라의 경우 궁극적으로 관련 독립법 제정이 된다면 가장 바람직스럽다할 수 있으나 법제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우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과 규칙 제정, 협약 체결 등을 공동병행하는 접근전략을 추진하도록 한다.

셋째, 객관적 리더쉽이 필요하다. 협의체는 지역의 부문별 기관들의 집합체이므로 자기이익중심으로 말미암아 갈등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일종의 중개인으로서 부문상호간을 연결하는 리더쉽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에 지역안전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제시하고 그것을 공유할 준비를 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협력에 참여하게 된다. 이때 경찰은 협의체 기구의 주도권을 무리하게 행사하려 하지말고, 참여주체간의 이해와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중개인 또는 조정자·방향제시자(path-finder) 역할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넷째, 치안협력 네트워크관리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역내·지역간 지역안전 프로그램정보와 경험, 그리고 방법이 공유되어 확산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고, 중앙정부(경찰청)는 다자간 협력이 작동하도록,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개발 보급하여야 한다.

다섯째, 치안협의체의 협력지수(collaboration index) 또는 성과지표(performance index)를 개발하여 적용하고 이를 성과지표화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협력을 유도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작동시킬 필요가 있다. 요컨대, 협의회의 '사업 이행정도에 대한 점검·평가' 기능을 반드시 넣고 간사 역할을 담당하는 지방경찰청(경찰서)의 업무에도 "협의회의 사업 이행정도에 대한 점검·평가 계획 수립·시행"을 삽입하도록 한다. 이는 협의회에 참여하는 주체간 협약 체결문에도 반드시 삽입하여 참여 당사자(네트워크 행위자)들 간의 협력 수준을 높이고 협약이행의 점검·평가·확산 및 갱신을 도모함으로써 치안협력 네트워크의 지속성 확보와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한 기반을 다져나갈 수 있다.

여섯째, 치안협력 네트워크의 실무집행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무국 설치가 필요하다. 현재 지역치안협의회의 규정에 따르면 간사 역할을 담당하는 지방경찰청(경찰서) 경무과가 실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으나 치안협력체의 법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사업집행에 돌입할 경우 협의회 산하의 실무분과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협의회 기능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 경우 협력의 범주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내기 위해서는 향후 사무국의 설치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가칭 「지역치안지원센터」를 출범시켜 상근인력을 두되 경찰관과 참여주체 파견인력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이 센터를 중심으로 참여주체 실무자들과 상시적인 회의를 갖고 지역안전 자원의 분포와 동향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민관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자료 DB의 구축 및 민-관 상호신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한다.

5. 결 어

이상에서 지역사회의 불법·무질서 행위 등 생활안전에 위협적인 치안환경에 지역내 기관·단체가 공동 대응하여 지역안전을 도모하고, 법질서 준수문화의 조성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통하여 선진일류국가 건설에 기여하고자 지역사회 다기관 치안협력 네트워크 구성방안과 효과적인 관리전략을 제시하였다.

결국, 현재 운영 중인 지역치안협의회가 기존 협의체 기구의 실패전철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주체간 유기적 협력과 지속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네트워크 관리운영전략이 효과적으로 작동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어디까지나 네트워크의 한 주체로서 참여주체간의 이해와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중개인 또는 조정자·방향제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PSI**

치안정책 관련 연구수요 조사

치안정책연구소에서는 치안정책과 관련된 연구수요를 연중 접수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제안을 기다립니다.

치안행정에 관한 이론 정립 및 다양하고 심도있는 치안정책 개발과 관련하여 연구를 희망하는 주제를 자유로이 선정, 연구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이나 FAX 또는 e-mail을 이용하여 치안정책연구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 webmaster@psi.go.kr

■ 외국 경찰교육기관

일본경찰대학교(日本警察大學校)

-NATIONAL POLICE ACADEMY-

이 형 범 경찰연구원
치안정책연구소 범죄수사연구실

일본경찰대학교의 역할과 조직

■ 역할

일본경찰대학교는 동경도 후꾸시 아사히쵸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가경찰기관인 경찰청의 부속기관으로서 상급간부가 갖추어야 할 지식, 기능, 지도 능력 및 관리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과 경찰업무에 관해 연구하는 기관이다.

■ 조직

교무부, 경무교양부, 생활안전교양부 등 10부와 특별수사간부연수소, 국제경찰센터, 재무수사연구센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경찰대학교의 교육과정

소속장 임용예정자, 경부(경감에 해당)승진자, 과장보좌승진자, 국가공무원채용시험으로 경부보(경위에 해당)로 채용된 경찰관 그 밖에 경찰간부 등을 대상으로 여러 분야에서 필요한 지식, 기능 등의 실무능력 및 지도·관리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한 수준 높은 교육을 하고 있다.

세부교육과정 소개

○ 경찰운영과(警察運營科)

소속장 임명예정자를 대상으로 소속장으로서 필

요한 조직운영, 수사지휘에 관한 관리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교육과정이다(기간: 2-3주).

○ 경부임용과(警部任用科)

경부승진자(승후자 포함)를 대상으로 경찰서의 과장으로서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교육시키기 위한 과정이다(기간: 4개월, 연 3회).

[참고] 한국경찰의 경부임용과정 연수 기회

경부임용과정은 연 3회 4개월간 경부임용자 또는 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과정이다. 현 계급이 경감으로서 국외단기훈련시험(행안부 주관)에 합격한 경우, 일본경찰대학교와 교섭을 통하여 경부임용과정에서 일본 경찰간부와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과장보좌임용과(課長補佐任用科)

과장보좌(경부상당직) 승진임용 또는 승진임용이 예정된 일반직원에 대해 그 직무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교육하는 과정이다(기간: 2주).

○ 초임간부과(初任幹部科)

국가공무원채용시험에 의해 경부보(경위)로 채용된 경찰관을 대상으로 간부로서 필요한 기초교양을 교육한다(기간: 6개월).

○ 행정실무과(行政實務科)

국가공무원시험에 의해 순사부장(경사)으로 채용된 후 경부로 승진임용된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다(기간: 3주)

○ 술과지도자양성과(術科指導者養成科)

경찰술과(유도, 검도, 체포술 및 체육)의 지도자에 대해 그 직무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기능을 교육시키는 과정이다(기간: 4개월).

○ 교관양성과(教官養成科)

경찰학교 교관으로 예정된 경부 또는 경부보(상당직의 일반직원 포함)을 대상으로 교관으로서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교육시키는 과정이다(기간:1개월)

특별수사간부연수소

■ 역할

상급 간부로서 필요한 수사의 지휘 및 관리 기타 고도의 전문기술을 교육시키는 기관이다.

■ 입소자격 및 연수과정

경부임용과를 졸업하고 일정의 수사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각 도도부현(都道府県) 경찰본부에서 장래의 수사담당과장으로서 적격성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약 5개월간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06년부터 약 2주간 단기연수(수사간부양성과)도 실시하고 있다.

■ 교육내용

각계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 각종 실무연수, 해외연수 및 과정연구논문의 작성 그 밖에 구체적인 사례를 토대로 교수와 소수의 연수생이 함께 문제제기와 해결책을 검토하는 세미나 형식의 교육을 한다.

국제경찰센터

■ 역할

국제경찰센터는 1985년 4월 국제수사연수소로 설립된 이후 2006년 4월 외국경찰직원에 대한 기술지원 등의 국제협력사무가 소관사무로 명확히 됨에 따라 현재의 국제경찰센터로 개칭되었으며 경찰 직원을 대상으로 국제범죄수사, 국제수사공조, 국제협력 그 밖의 경찰활동에 관한 학술연수 및 외국 연수생을 대상으로 경찰과 관련한 학술연수를 하고 있다.

■ 연수내용

○ **경찰직원 대상 연수**

제일 외국인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외국어(영어, 중국어, 한국어 등), 출입국관리, 국제수사공조, 형사절차와 관련된 조약 및 국내외 법제 등을 교육시키고 또한 기술지원을 위한 전문가로서 외국파견이 예정된 자를 대상으로 국제협력 등에 관한 교육도 하고 있다.

○ **외국연수생 대상 연수**

일본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경찰운영, 교번(파출소)제도, 수사기법, 범죄감식 등의 기술 및 노하우를 각 분야별로 독자적 또는 국제협력기구(JICA)와 공동으로 각국 연수생을 대상으로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고 적극적인 기술 이전을 하고 있다.



경찰정책연구센터

■ 역할

경찰정책연구센터는 일본경찰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과제나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관하여 조사연구를 하기위해 1996년 5월에 설치되었다.

■ 포럼 등 개최

사회안전정책, 조직범죄대책, 테러대책 등에 관한 조사·연구 및 대학 연구자, 외국 연구자·연구기관과도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 2008년 9월 경찰정책 포럼에서는 「향후 성범죄대책」을 주제로 우리나라 경찰관이 참석하여 발표하기도 하였다.

맺 으 며

그 외에도 경찰의 통신시스템을 연구개발·교육하는 경찰통신정보센터 및 경찰통신정보학교가 있다. 이처럼 일본경찰대학교는 상급경찰간부 교육,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 경찰통신시스템 개발 등 주요 일본경찰기관의 하나로서 자리잡고 있다. [PSI](#)

■ 현장경찰관의 목소리

외국 도피범죄인 인도의 문제점과 그 대안

경감 장태영
충북지방경찰청 제천경찰서 생활안전계장

외국으로 도피한 범죄인을 범죄지국 등의 관할로 복귀시킬 때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존재할 수 있겠지만 범죄인인도제도에 의한 복귀만이 정규의 수단이다. 범죄인인도는 조약 등의 규정에 따라 요청국이 피요청국에 당해범죄인의 재판, 소추 또는 이미 선고받은 형의 집행을 위해 요청국의 법위반으로 기소된 자의 인도를 요청하는 절차, 그리고 이에 따른 범죄인의 인도를 말한다. 따라서 범죄인인도를 제외한 수단에 의한 범죄인의 송환은 비정규 인도 내지 위장된 범죄인인도라고 한다.

현재 각 국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NCB) 간의 공조로 범죄인을 소재국 국내법에 따른 추방 절차를 통해 기소를 요망하는 국가로 송환하는 것은 완전히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위장된 범죄인인도는 기소를 요망하는 국가와 범죄인 소재국, 두 국가의 공모 내지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달성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이러한 관행은 한국에서 정식 범죄인인도에 비해 대단히 빈번하게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방은 외국인의 소재가 공공질서 등에 부합하지 않고 국가의 공공복리에 해가 되는 경우 그 국가의 영토에서 구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범죄인인도는 집행관할권이 가지는 영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고안된 제도로서 범죄인을 범죄지국과 같이 기소, 처벌 등을 원하는 국가로 송환하는 것이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하지만 추방은 자국의 국내질서와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범죄인의 송환을 위해 의도된 것이 아니다. 양자는 목적에서부터 차이가 확연히 나타나며, 전혀 별개의 제도이다.

그런데 위장된 범죄인인도에 대하여 관련된 두 당사국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없고, 제3국도

그러하다. 국제법은 추방과 범죄인인도라는 서로 다른 두 체제의 접점으로 나타나는 위장된 범죄인인도를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 위장된 범죄인인도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적절한 국제법은 부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추방과 범죄인인도는 전혀 목적이 다른 체계이며 그 기능은 목적에 의하여 제한받아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현재 추방과 범죄인인도에 관한 국제법 자체가 위장된 범죄인인도의 활용을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범죄인인도에 관한 조약과 관습법에 존재하는 범죄인에 관한 보호장치로 위장된 범죄인인도는 회피할 수 있게 한다. 물론 이러한 논의는 범죄인인도에 보장된 인도제한사유를 개인이 주장하고 항변할 수 있는 권리로 부여된 것을 전제한다. 또한 위장된 범죄인인도는 여러 인권조약에서 금지하는 자의적인 추방에 해당하며, 이 점에서 인권조약 위반 가능성도 있다.

위장된 범죄인인도는 법의 일반원칙인 신의성실에 위반되며 권리남용에도 해당한다. 범죄인에게 보장되는 절차를 회피한다는 측면에서 적법절차의 원칙도 침해하고 있다. 위장된 범죄인인도가 관행화되고 때로는 국가 예양의 명목 하에 빈번하게 활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위장된 범죄인인도가 허용된다는 법적확신을 획득한 것은 아니며 이로써 국제법 위반의 측면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다.

현재의 위장된 범죄인인도는 인터폴의 훌륭한 전산망과 범죄인인도의 단점이 결합하여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터폴의 장점이 위장된 범죄인인도에서 활용되어서는 안 되며, 정식범죄인인도 절차 내로 흡수되어야 한다. 즉, 인터폴의 장점은 범죄인인도의 단점과 결합에 대한 대안으로써의 추방 등에서 활용되어서는 안 되며 범죄인인도의 결합을

보완하고 범죄인인도의 신속성을 확보하는데 활용되어야 한다. 범죄인인도 절차 내에서의 인터폴 활용은 적색수배서를 긴급인도 구속요청서로 인정하여 더욱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적색수배서는 긴급인도 구속요청서로서의 실질에 부합하며, 범죄인인도 절차의 속도를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터폴의 활용은 다수의 다자·양자간 범죄인인도조약과 UN 범죄인인도 모델 협약에서도 나타나며, 한국도 4개국과의 범죄인인도조약에서는 인터폴을 긴급인도 구속요청의 채널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실제로는 조약 규정과 상관없이 적색수배서를 긴급인도 구속요청서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세계 70여 국가가 최소한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된 국가 간에는 적색수배서를 인정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어 이들 국가와의 관계에서 적색수배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또 정보공유를 넘어서 적색수배서의 장점을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긴급인도 구속요청서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해 국가가 적색수배서 인정 여부에 있어서 상호주의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범죄인인도조약 체결에 있어 적색수배서를 활용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내법상으로도 인터폴 활용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므로 범죄인인도법 등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현재 적색수배서의 요청에 있어 절차상의 흠(국내적으로는 범죄인인도 보증 문제, 국제적으로는 인터폴의 수배서 실질적 검토 권한 부재)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적색수배서의 활용을 권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장된 범죄인인도를 막기 위해 향후 범죄인인도조약이나 범죄인인도법에는 추방을 범죄인인도의 대안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리고 범죄인인도 이외의 방식으로 송환된 범 죄인을 이전 소재국으로 귀환하도록 하거나 법정 지국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결국, 인터폴이 범죄인인도절차의 밖에서 활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정식 범죄인인도 틀 내에서 장점이 발휘되어야 한다. [PSI](#)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로서 치안정책연구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치안정책리뷰는 치안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www.psi.go.kr).

치안정책리뷰 편집팀

편집팀장 : 유동열 연구관
 편집위원 : 김학신, 조은순, 이형범, 권태형 연구관

치안정책리뷰 편집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동1길 29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446-703)
 ● 전화: 031-285-2616 (경비) 61-5207
 ● e-mail: webmaster@psi.go.kr

치안정책연구 제23호 원고 공모

1. 공모기간 : 2009. 8. 13(월) ~ 9. 30 (수), 51일간
2. 응모자격 : 국내외 대학 전임교수, 연구소 연구원, 대학원생 및 경찰실무 경력자 등
3. 원고제출
 - 원고내용
 - 투고원고는 치안정책, 범죄수사, 치안행정, 생활안전, 사회안전, 교통, 안보대책 등 경찰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내용
 - 현재까지 다른 매체 또는 지면에 발표되지 않은 원고
 - 원고분량 (A4 기준) : 30쪽 이내
 - 제출양식
 - 연구소에서 지정한 양식으로 제출(첨부파일 참조)
4. 원고료 지급
 - 200자 원고지 1매당 3,000원 기준으로 지급
 - A4 용지 1쪽(아래 한글 11크기)을 원고지 4매로 간주하여 지급하되, 공고문에서 지정한 분량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지급되지 않음.

- ※ 단, 경찰청 산하 소속 공무원은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음
- 5. 응모방법
 - 신청자 약력이 포함된 원고를 9. 30(수)까지 우편, 팩스 또는 E-mail을 이용하여 치안정책연구소로 접수
 - 원고는 A4 용지에 작성하여 출력본 4매 우송으로 제출
 - ※ 원고 파일은 E-mail로 제출
 - 제출하신 원고는 반환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6. 원고 선정 및 발표
 - 심사위원회에서 응모자가 제출한 원고를 심사하며,
 - 심사결과는 응모 마감 후 30일 이내에 경찰청,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 7.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1길 29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 E-mail : yim0183@naver.com
 - Fax : 031-285-0184
 - 문의 : 편집실 (김윤영 연구관, 일반 031-283-8735, 경비 61-5305)
 운영계 (일반 031-285-0183, 경비 61-5023)

**동국대학교 「경찰·범죄연구소」와
학술교류 협정 체결**

치안정책연구소(소장 김길배 치안감)와 동국대학교 「경찰·범죄연구소」(소장 이윤호 교수)는 2009년 9월 23일 치안정책연구소 세미나실에서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앞으로 양 연구소는 학술세미나, 토론회 등을 공동 개최하고, 학술자료 및 연구 결과물을 상호 교환하며 경찰학 분야 전반에 걸쳐 학문 발전을 위해 각종 연구 활동에 있어서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2009년 3/4분기 안보정세 분석회의 개최

2009년 9월 14일에 치안정책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전 연구관이 참여한 가운데 2009년 3/4분기 안보정세 분석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치안정책연구소 유동열 연구관이 「사이버상 안보 위해 실상 및 대책」이라는 주제로 발표 하였으며 안보대책연구실의 송경호, 김윤영, 김용민 연구관이 함께 토론하였다.



위촉·용역연구과제 중간발표

2009년 8월 ~ 9월간 5회에 걸쳐 치안정책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전 연구관과 경찰청의 연구과제 관련부서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2009년 위촉 연구과제 및 용역(지정, 자유)과제 연구위원이 중간보고서 발표 후 연구주제 및 중점 연구 사항에 대하여 의견 교환 및 향후 연구방향을 심도 있게 토의하였다.

연구관 동정

◆ 조용관 연구부장은 2009년 9월 22일 국회의원회관 130호에서 열린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탈북 청소년 남한 부적응 문제와 대응책」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 조용관 연구부장과 김윤영 연구관(안보대책연구실)은 2009년 9월 7일 「탈북자와 함께 하는 통일」(한울아카데미)이라는 단행본을 출간하였다. 이 책은 탈북자들의 정착 과정 및 적응 실태를 다루면서 탈북자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 정지운 연구관(범죄수사연구실)은 2009년 8월 28일에 「폭력단체대책법의 이해」(한국학술정보)라는 단행본을 출간하였다.

◆ 정 용 연구관(범죄수사연구실)은 2009년 9월 18일 순천향대에서 개최된 21차 수출보험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국제금융거래에서의 탈법위험과 대응과제」를 발표하였다.

◆ 유동열 연구관(안보대책연구실)은 2009년 10월 16일 법무연수원에서 제3기 공안수사 전문화과정(중견 공안검사) 연수생을 대상으로 '안보위해세력의 현황과 실체'에 대해서 강의한다. **PSI**

◆ 치안정책연구소 소개

치안정책연구소는 급변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 우리 경찰이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대한민국의 치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생산해 내는 산실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경찰연구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경찰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찰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비전 수립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연구진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연구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치안관련 최고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최신 국내외 연구자료의 DB(데이터베이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치안정책연구 토대의 확충과 해외 치안정책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등에도 힘을 기울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치안행정 수요에 부응하는 적실성 높은 연구성과 창출로 치안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명실상부한 한국경찰의 싱크탱크(Think Tank)로서 치안정책분야의 세계 최고 연구기관으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PSI](#)

◆ 치안정책연구소 부서별 업무

부 서	담 당 업 무
정책기획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치안수요 예측 및 대응방안 수립 • 기획·정책개발·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 감사정보통신·홍보 분야 등에 관한 연구 • 총무행정·보수·후생복지 등에 관한 연구
사회안정 대책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정보활동 및 국내 사회안정 대책 연구 • 경찰 경비활동 및 대테러 대책 연구
안보대책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을 대비한 치안분야의 연구 • 남북교류 및 북한이탈주민 관리방안 연구 •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연구·분석 •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 및 발전방안 연구
생활안전 대책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예방 및 소년·여성범죄에 관한 연구 • 경찰외근, 민간경비 업무 등 중장기 생활안전 대책 연구
교통대책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교통의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교통업무전반의 효율성과 안전성 제고를 위한 연구
범죄수사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수사의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범죄분석 및 범죄수사에 관한 연구
수사구조 개혁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수사구조개혁 방안에 관한 연구 • 수사경찰제도 및 수사절차 개선에 관한 연구 • 형사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연구
운영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서, 보안, 인사 등에 관한 사항 • 회계, 청사유지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소 홈페이지 및 자료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연구소내 서무와 다른 연구실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 연구소 중장기 발전계획 및 홍보업무 • 연구계획 수립·관리 및 세미나 개최에 관한 사항 • 간행물의 인쇄·배포에 관한 사항 •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등 섭외 업무

치안정책연구소 조직도

